차 례

공 고

○ 제2025-1770호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공람 공고 ····· 3

인 사

공 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 - 1770호

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공람 공고

1. 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원 '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'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2. 본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5년 11월 06일

노 원 구 청

가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: 2025.11.13. ~ 2025.12.15.

나. 공람장소 :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, 공릉2동 주민센터(☎ 02-2116-3920)

다. 의견제출 :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(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) 또는 온라인(서울도시공간포털[https://urban.seoul.go.kr]) 제출

라. 공람내용

- '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'

  * 별첨 '요약본' 참고

마. 기타 공지사항

- 상기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[별 첨]
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 설	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	노원구 공릉동 254번지 일대	-	증) 29,178.8	29,178.8	-

2. 정비계획(안)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명 칭	면 적(㎡)	비율(%)	비 고
합 계			29,178.8	100.0	-
획 지		소 계	27,109.9	92.9	-
		공동주택용지	27,109.9	92.9	-
정비기반시설 등		소 계	2,068.9	7.1	-
		도로	309.1	1.1	-
		공원	1,759.8	6.0	-

2)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

가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주거 지역	합 계	29,178.8	-	29,178.8	100.0	-
	제2종일반주거지역	1,759.8	-	1,759.8	6.0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27,419.0	-	27,419.0	94.0	-

나) 용도지구 결정 : 해당없음

3)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교통시설

▣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2	26	30~44	보조간선	1,600	방학동 (광로17)	신내동시계	일반도로	-	1971.04.07	-
변경	대로	2	26	30~44 (3)	보조간선	1,600 (103)	방학동 (광로17)	신내동시계	일반도로	-	1971.04.07	일부구간 확폭

※ ( )는 구역내 포함되어있는 폭원 및 연장임

▣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 2-26	대로 2-26	• 도로 폭원변경(일부 확폭) -노원로변 3m 확폭	•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도로 확폭

나) 공간시설 : 변경없음

▣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-	마당공원	어린이공원 ②	공릉동 758-3	1,759.8	-	1,759.8	서고 제 2005-35호 (25.02.05.)	-

4)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
구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법적기준	면 적(㎡)	비 고
공동 이용 시설	경로당	공릉동 254번지	330.00	350.00	
	어린이집		330.00	370.00	개방형
	작은도서관		158.00	300.00	
	다함께 돌봄공간		66.00	485.00	개방형
	노인돌봄공간		-	480.00	개방형
	주민공동시설		1,331.63	600.00	지하
	어린이놀이터 등			950.00	
부대시설	관리사무소		42.95	100.00	
	경비실		-		

※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, "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"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

5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

가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 고
	명 칭	면적(㎡)	명 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 축	철거 이주	
신설	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	29,178.8	획지1	27,109.9	공릉동 254 일원	11	-	-	11	-	-

나) 건축시설계획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구역구분</th><th colspan="2">가구 또는 획지 구분</th><th rowspan="2">위 치</th><th rowspan="2">주용도</th><th rowspan="2">건폐율(%)</th><th colspan="4">용적률(%)</th><th rowspan="2">높이(층수, m)</th><th rowspan="2">비고</th></tr>
<tr><th>명칭</th><th>면적(㎡)</th><th>명칭</th><th>면적(㎡)</th><th>기준</th><th>허용</th><th>상한</th><th>법적 상한</th></tr>
<tr><td>신설</td><td>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</td><td>29,178.8</td><td>획지1</td><td>27,109.9</td><td>공릉동 254 일원</td><td>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</td><td>50 이하</td><td>210 이하</td><td>243.6 이하</td><td>263.6 이하</td><td>300 이하 (299.78 이하)</td><td>35층 이하 (145m 이하)</td><td>사업성 보정 계수 1.68 적용</td></tr>
<tr><td>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</td><td colspan="13">• 주택공급계획 : 709세대 (기부채납임대주택 30세대, 국민주택규모주택 57세대 포함)
• 전체 건립규모(전용면적 기준)
※ 세대수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(도시정비법 제54조)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세대수(세대)</th><th>비율(%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계</td><td>709</td><td>100.00</td><td>공공주택 87세대 포함</td></tr>
<tr><td>60㎡이하</td><td>59.98㎡</td><td>104</td><td>14.67</td><td>공공주택 70세대 포함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60~85㎡ 이하</td><td>74.98㎡</td><td>118</td><td>16.64</td><td>공공주택 12세대 포함</td></tr>
<tr><td>84.98㎡</td><td>421</td><td>59.38</td><td>공공주택 5세대 포함</td></tr>
<tr><td>85㎡초과</td><td>103.70㎡</td><td>66</td><td>9.31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• 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60% 이상 : 90.69%</td></tr>
<tr><td>심의완화 사항</td><td colspan="13">•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)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3">용적률 완화</th></tr>
<tr><th>정비계획용적률</th><th>변경</th><th>예정법적상한용적률</th></tr>
<tr><td>완화 사항</td><td>263.6%</td><td>증) 36.18%
(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)</td><td>300% 이하
(299.78% 이하)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</td><td colspan="13">• 건축한계선 지정 [※ 정비계획 결정도 참고]
- 노원로변, 대상지 남측 태강아파트변, 이수청솔8단지아파트변 : 6m
- 그 외 : 3m
※ 전면공지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(지정권자 : 노원구청장)</td></tr>
<tr><td>기타사항에 관한 계획</td><td colspan="13">• 공공보행통로(1개소, 폭원 6m) [※ 정비계획 결정도 참고]
- 노원로1가길에서 마당공원 연계(1개소)
-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(지정권자 : 노원구청장)
- 인근 초등학교 통학 안전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되, 주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통학 및 생활활동 시간(오전 7시 - 오후 9시) 에만 운영 예정
• 차량출입불허구간 : 노원로변 일부(1개소 , 70m) 지정 (도면표시 확인)
•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(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)
•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: 노원로변</td></tr>
</table>

6) 용적률 산정내용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12">산정내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토지
이용계획
(㎡)</td><td rowspan="2">계
(구역면적)</td><td rowspan="2">획지
(공동주택
등)</td><td rowspan="2">순부담
면적</td><td colspan="5">정비기반시설(신설+존치) 면적</td><td colspan="3">순부담 제외 면적</td></tr>
<tr><td>소계
(A+B
+C+D)</td><td>신설
정비기반시설
(도로)
(A)</td><td>건축물
대지지분
(임대주택)
(B)</td><td>건축물
환산부지
(임대주택
환산부지)
(C)</td><td>존치
정비기반시설
(어린이공원)
(D)</td><td>새로 설치할
정비기반시설
내 국·공유지
(E)</td><td>대지 내
용도폐지되는
기존 기반시설
국·공유지
(F)</td><td>존치하는
정비기반시설
국·공유지
(어린이공원)
(D)</td></tr>
<tr><td>29,178.8</td><td>27,109.9</td><td>1,947.1</td><td>3,706.9</td><td>309.1</td><td>865.8</td><td>772.2</td><td>1,759.8</td><td>－</td><td>－</td><td>1,759.8</td></tr>
<tr><td>순부담계획
(용적률 완화의
기반시설 등
면적)</td><td colspan="12">• 정비기반시설 면적(A+B+C+D) －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면적(E) -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·공유지면적(F) － 존치하는 정비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(D)
= 3,706.9㎡ － 0㎡ － 0㎡ － 1,759.8㎡ = 1,947.1㎡ (7.1%)</td></tr>
<tr><td>공공시설등
부지
(토지) 면적</td><td colspan="12">• 1,174.9㎡
= (도로) 309.1㎡ + (임대주택 대지지분) 865.8㎡ = 1,174.9㎡
※ 임대주택 대지지분 : 대지면적 x (임대주택 연면적 / 전체 연면적) = 27,109.9㎡ x (4,047.84㎡ / 126,753.2㎡) = 865.8㎡</td></tr>
<tr><td>공공시설
설치에
대한
환산부지
면적</td><td colspan="12">• 772.2㎡
=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= 건축연면적(지상&지하)× 건축비 ÷ 부지가액(공시지가 2배)
※ (지상)전용 59㎡, 74㎡ : (1,979.52㎡ × 2,077,727원 + 618.66㎡ × 1,975,455원) ÷ 8,655,936원= 616.4㎡
※ (지하)전용 59㎡, 74㎡ : (1,104.48㎡ × 930,910원 + 345.18 × 930,910원) ÷ 8,655,936원= 155.8㎡</td></tr>
<tr><td>기준용적률</td><td colspan="12">• 기준용적률 = 210%</td></tr>
<tr><td>허용용적률
(사업별
인센티브
항목 적용)</td><td colspan="12">• 243.6% (허용용적률최대량 계획, 사업성 보정계수 1.68 적용시)
= 기준용적률+ (인센티브 × 사업성 보정계수) = 210% + (20% × 1.68) = 243.6%
※ 공공보행통로(6.1%), 돌봄시설(4.4%), 고령서비스시설(4.5%), 층간소음 해소(5%) ⇒ 20% 적용에 사업성보정계수 1.68 적용
•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인센티브 (허용용적률)</th><th>적용</th></tr>
<tr><td>공공
보행통로</td><td>•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등 조성 (지역권* 설정)
－ 기준 : 기준용적률× (조성면적/대지면적) × a ※a=1이하
* 지역권 :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(등기로 설정)</td><td>10%p
이내</td><td>6.1%p
210% x (787㎡÷27,109.9㎡)
= 6.1%</td></tr>
<tr><td>돌봄시설</td><td>• 지역에 필요한 놀이·돌봄시설* 설치 및 제공 (무상임대)
－ 기준 : 기준용적률x(조성면적(의무면적제외) /주민공동시설면적(의무면적)) x a
※a=0.1이하
* 국공립어린이집, 다함께돌봄공간, 서울형키즈카페, 우리동네키움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 실내어린이놀이터 등</td><td>5%p
이내</td><td>4.4%p
210% x (459㎡÷2,215.63㎡)
x 0.1 = 4.4%</td></tr>
<tr><td>고령
서비스시
설</td><td>•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* 설치 및 제공(무상임대)
－ 기준 : 기준용적률x(조성면적(의무면적제외) / 주민공동시설면적(의무면적)) x a
※a=0.1이하
* 노인복지시설(어르신스포츠센터, 청춘카페)등</td><td>5%p
이내</td><td>4.5%p
210% x (480㎡÷2,215.63㎡)
x 0.1 = 4.5%</td></tr>
<tr><td>층간소음
해소</td><td>• 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
－ 기준 : 1등급 5%, 2등급 3%</td><td>5%p
이내</td><td>5%p
(1등급 적용)</td></tr>
<tr><td>합 계</td><td colspan="2">최대 20%p 이내</td><td>20.0%p (20%p 적용)</td></tr>
</table>
※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,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</td></tr>
<tr><td>상한용적률</td><td colspan="12">• 정비계획 용적률 : 263.6%
※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× [1 + (1.3 × 가중치 ×α토지)+ (1× α건축물)]
= 243.6% + [(230% x 1.3 × 가중치 ×α토지) + (230% x 1× α건축물)]
= 243.6% + [(230% x 1.3 × 가중치 1 × α토지 0.04477) + (230% × 1 × α건축물 0.02943)]
<table>
<tr><td>가중치</td><td>= 기반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/ 사업부지 용적률 = 230% / 230% = 1.0</td></tr>
<tr><td>α(토지)</td><td>=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 제공 면적 /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제공 후 대지면적 = (309.1㎡ + 865.8㎡) / (27,109.9㎡ - 865.8㎡) = 0.04477</td></tr>
<tr><td>α(건축물)</td><td>= 공공시설 등 부지(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) 제공 면적 / 공공시설 등 부지(토지)제공 후 대지면적
= (772.2㎡) / (27,109.9㎡ - 865.8㎡) = 0.02943</td></tr>
</table>
※ 상한용적률산정 시 허용용적률은 사업성 보정계수 미적용 수치임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법적
상한용적률</td><td colspan="12">•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• 법적상한용적률 = 300%
(건축계획 용적률 299.78%)</td><td colspan="6">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의
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</td></tr>
</table>

7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도 시 경 관	• 사업시행시 사업지 주변 공릉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Open Space개념과 도시적 디자인을 도입하여 기존의 노후된 경관을 개선하고, 사업대상지 주변의 공동주택지 및 지형과 어울리는 경관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하며 동시에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	–
환 경 보 전	•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, 내부유입 최소화 • 구역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 조성으로 불투수 면적 최소화 및 녹지율 확보 •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, 진동,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	–
재 난 방 지	•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 •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·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• 재해시 소방도로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를 구축 • 침수 등 여러차례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지반조성 계획 수립	–

8)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정비구역 주변현황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	비고
대상지 반경 200m 내 태릉초등학교 입지	▮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 • 건설공사 시 소음, 진동, 먼지 등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억제 •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·진동을 규제 •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▮ 소음·진동 발생 저감대책 • 저소음·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–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(제22조)에서는 '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)'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'소음·진동관리법(제49조2)'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•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–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•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– 항타기,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	

9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가 구	면 적(㎡)	획 지			비 고
			명칭	위 치	면 적(㎡)	
신설	획지1	29,178.8	획지1	공릉동 254 일원	27,109.9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인 사

노 원 구 (발령 제292호)

구분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**이 용 수**	지방시설사무관(건축)에 임함 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면함(퇴직일 : 2025.10.31.)	도시계획국 건축안전센터	지방시설 주사(건축)

2025. 10. 31.字.

노 원 구 (발령 제293호)

구분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**이 혜 원**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미디어홍보담당관	지방행정서기

2025.11.1.字.

노 원 구 (발령 제296호)

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소 속	직 급
주 우 성	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(근무기간 : 2020. 11. 1. ~ 2025. 10. 31.)	문화도시행정국 교육지원과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
이 영 섭	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(근무기간 : 2023. 11. 1. ~ 2025. 10. 31.)	문화도시행정국 교육지원과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
오 연 희	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(근무기간 : 2023. 11. 1. ~ 2025. 10. 31.)	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
최 정 민	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(근무기간 : 2020. 11. 1. ~ 2025. 10. 31.)	보 건 소 월계보건지소	임기제지방의료기술서기(치위생사)

2025. 11. 1.字.

노 원 구 (발령 제297호)

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소 속	직 급
권 정 연	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(근무기간 : 2020. 11. 27. ~ 2025. 11.26.)	보 건 소 월계보건지소	임기제지방보건진료 주사(한의사)

2025. 11. 27.字.

노 원 구 (발령 제298호)

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소 속	직 급
주우성	지 방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라 급 (수 학 문 화 관 운 영) 에 임 함 문화도시행정국 교육지원과 근무를 명함 (근무기간 : 2025. 11. 1. ~ 2026. 10. 31., 주35시간)	신	규
최정민	임 기 제 지 방 의 료 기 술 서 기 (치 위 생 사) 에 임 함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근무를 명함 (근무기간 : 2025. 11. 1. ~ 2026. 10. 31.)	신	규

2025. 11. 1.字.

노 원 구 (발령 제299호)

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소 속	직 급
함은숙	지 방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마 급 (아 동 보 호 전 담 요 원) 에 임 함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(근무기간연장 : 2025. 11. 1. ~ 2026. 10. 31., 주35시간)	주 민 복 지 국 아동청소년과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
권해리	지 방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마 급 (불 암 산 나 비 정 원 운 영) 에 임 함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근무를 명함 (근무기간연장 : 2025. 11. 1. ~ 2026. 10. 31., 주35시간)	힐 링 도 시 국 여 가 도 시 과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

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소 속	직 급
송예빈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(불암산 나비정원 운영)에 임함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 근무를 명함 (근무기간연장 : 2025. 11. 1. ~ 2026. 10. 31., 주35시간)	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
김경헌	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(결핵의사)에 임함 보건소 생활보건과 근무를 명함 (근무기간연장 : 2025. 11. 1. ~ 2027 10. 31.)	보건소 생활보건과	임기제지방의무 사무관(결핵의사)

2025. 11. 1.字.

노 원 구 (발령 제302호)

구분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박 혜 윤	시간선택제 근무 해제를 명함 (1주당 35시간 근무)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8조의15의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명함 (기간 : 2025.11.1.~2026.12.31., 1주당 20시간 근무)	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	지방행정 서기

2025. 11. 1.字.

노원구의회 (발령 제2025-30호)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변 수 영	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의회사무국 근무를 명함 (근무기간: 2025. 11. 3.~2026. 11. 2.)	신	규

2025. 11. 3. 字.